

제 호

- 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(등록증)
- 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
- 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
- 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
- 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증
- 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증

성 명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):

생년월일:

주 소(주사무소 소재지):

상 호:

업 종(한정면허인 경우에는 ○○운송사업 한정면허로 표시):

업무 범위(한정면허의 경우만 해당함):

운행형태(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함):

차 고 지:

터미널의 위치(터미널사업의 경우만 해당함):

면허(등록)연월일:

면허(등록) 유효기간 . . . 부터 . . . 까지(년간)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
제28조
제36조
제49조의3
제49조의10
제49조의18 에 따라 위와 같이

여객자동차운송사업
자동차대여사업
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
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
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
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을 면허[등록 또는 (갱신)허가]합
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
시 · 도 지 사

직인